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동행명령 적용 증인 확대 및 활동 종료 위원회의 위증 고발〉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11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	3
2.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등 제출 처벌	7
3. 활동 종료 위원회의 위증 등 고발요건 신설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주민 · 서미화 · 박지원 · 정을호 · 이성윤 · 임호선
황명선 · 김 윤 · 김병주 · 곽상언 · 부승찬 · 윤준병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6. 25.

3. 회 부 일 : 2024. 6. 26.

※ 의안번호 : 9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또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 (안 제6조제1항)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증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이하 “동행명령”이라 함)하는 제도를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동행명령 적용대상 범위

동행명령제도 적용대상	현행법	개정안
국정감사·조사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청문회 포함)	○	○
청문회	×	○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u>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u>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청문회</u> -----
② ~ ⑦ (생략)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법」 상 위원회(본회의·소위원회 및 반 제외)에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국정감사·조사(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청문회 포함), ② 안건심의(안건심의를 위한 청문회 포함), ③ 청문회¹⁾ 및 ④ 인사청문회²⁾가 있음.

그 중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음.³⁾

1)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2) 「인사청문회법」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 제19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으므로(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2021, p.355),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에 관한 본 검토보고에서는 제외함.

대별	위원회	불출석 증인		의결일	비고
제18대	국무총리(김태호)임명 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	○○○	전 맨하튼 강서식당 사장	2010. 8. 25.	동행명령 거부
		○○○	전 태광실업 회장		
		○○○	전 김해시장		
	법제사범(검찰총장후보자 한상대 인사청문회)	○○○	행당동 토지 매수인	2011. 8. 4.	집행보류

3)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동행명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구인⁴⁾과 달리 증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동행의 방법으로 집행되지만,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법정형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음.⁵⁾

그런데, 현행법상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 국정감사·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출석요구가 가능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법정형과 관련하여, 현재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4) 「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 동행명령 의결 현황(제20대 ~ 제21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국정감사	-	1	2	2	1	2	8	3	19
국정조사	66	-	-	-	-	-	5	2	73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 청문회 증인까지 동행명령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면 해당 증인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게 되므로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증인과 청문회 증인에 대한 법정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현행 동행명령제도는 제9차 헌법개정으로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1988. 8. 5.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당시 동행명령제도와 함께 도입된 검증제도도 국정감사·조사에만 인정되었으나 2003년 2월 4일 법 개정을 통하여 안전심의의 경우에도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⁶⁾

6)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전심의 등을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뿐만 아니라 안전심의의 경우에도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을 개정이유로 밝히고 있음. 참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검증 관련 개정 전후 비교(2003. 2. 4.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검증) ①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검증) ①위원회는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2.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등 제출 처벌 (안 제14조제3항)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경우에 벌칙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여 제재하려는 것임.

[표-3] 개정안 형사처벌 대상

구 분	현행법	개정안
보고 요구를 거절한 자	○	○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	○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	○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	×	○

[표-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② (생략) <신 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⁷⁾는 보고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서류등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그 요구를 ‘거절한 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회의 보고 및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벌칙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벌칙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는 국회의 보고 및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거짓 보고 등에 따른 형사책임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⁸⁾

둘째, 법정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정형의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등의 죄 등 벌칙규정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8)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에 대한 제20대국회 논의[제34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2017. 2. 21.)]에서 거짓 보고 및 자료제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할 경우, 정부가 국회의 고발을 의식하여 자료제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표-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법정형

구 분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u>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u>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 징역
제14조 위증 등의 죄	<u>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 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u>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3. 활동 종료 위원회의 위증 등 고발요건 신설 (안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개정안은 ①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서류등 제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에 맞추어 해당 죄의 고발과 검사의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⁹⁾하는 한편, ②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위증 등의 죄¹⁰⁾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6] 개정안 고발방식

구 분	현행 고발방식	개정안 고발방식 (현행 고발방식에 추가)
고발전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존속	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고발 주체·요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1/3 이상 연서)	의원 10명 이상 연서
고발명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 (청문회의 경우 연서한 위원의 이름)	연서한 의원의 이름
고발대상 범죄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4조(위증 등의 죄)

9) 고발과 검사의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은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서류등 제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과 연계·부수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다루지 않음.

10) 위증 등의 죄

◦ 현행법: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개정안: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표-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고발) ① -----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 ----- ----- ----- -----.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¹¹⁾상 위증

-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

등의 죄¹²⁾에 대한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음.

즉, 현행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고발이든 재적위원의 연서에 따른 고발이든 모두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¹³⁾

그런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해당 특별위원회의 소멸로 인하여 고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12)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3)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제15조 제3항). 따라서 그 위원회가 고발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므로 제15조 제1항 본문의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위와 같은 본문에 이어서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도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재적위원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재적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용법에 부합한다. (생략)

② 청문회를 개최한 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의 종료로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후에는 청문회에서 증언한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생략)

③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생략)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활동기한 종료로 위원회가 소멸된 때 등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증인·감정인의 거짓 없는 진실된 진술·답변·감정과 사실에 기반한 보고 및 서류등의 제출을 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상설적 성격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와 한시적 성격의 특별위원회 간 고발기한의 차이¹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아니었던 의원도 고발할 수 있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고발 주체로 한정하여, 그 외의 위원회나 의원은 고발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증인·감정인 등과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고 위증 등의 여부를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나 그 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고발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고발 주체를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14)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경우 해당 의회기(국회의원의 임기 4년) 내에는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특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기간 내에서만 고발이 가능함. 참고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 중 실시한 국정감사 증인에 대하여 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 중 고발한 사례가 있음(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2013년 국정감사 증인의 위증에 대하여 2014. 8. 18. 고발 의결)

위원이었던 의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국회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연장되거나 특정 행위와 결부되어 활동기한 종료 후에도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¹⁵⁾ 개정안과 같이 활동기한 종료 후에도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상 해당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정하는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¹⁶⁾(2018. 4. 17. 개정·시행)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국정조사 등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가 대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15)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③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1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017